

“전국의 각 분야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하는 20년 전통의 NGO종합모니터단”

보도자료

2018. 3. 6. (총5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썩고개로 87, 반석빌딩 6층 전화.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간사단체 법률소비자연맹

수 신 : 정치부, 사회부, 미디어 NGO팀

제 목 : 채널A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허위·비방방송 규탄 기자회견안내

부정부패는 외면하고, 허위·비방보도 일삼는 종편씨라시 채널A를 퇴출 구속수사하라

1. 귀 신문·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20년 동안 매년 헌신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1천명여의 대학생·교수, 변호사, 변리사, 의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모니터들이 국회의 경제적지원 제의도 사양하면서 순수한 애국심으로 공정하고 성실한 의정감시활동으로 ‘국회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는 ‘국정감사 모니터평가(우수상 시상)’ 제도를 정착시킨 27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로서,

주) 채널 A가 2017. 11. 14.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무단침입,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의 불법취재와 2017. 11. 19.~20. 명백한 허위사실로 비방보도 언론폭력을 행사한 책임자의 구속수사와 국가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방송채널의 인가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3. 이에, 귀 언론·방송사에서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한국NGO연합 사법감시배심원단이 공동주최하는 아래와 같은 “채널A 퇴출촉구 기자회견”을 취재·보도해 주시기를 삼가 양망합니다. 귀 신문·방송사의 행운을 거듭 기원합니다.

☐ 일시 : 2018년 3월 6일(화) 오전11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 주최 : 국정감사NGO모니터단/사법감시배심원단

☐ 내용 : 1. 채널A 규탄 기자회견문 낭독 - 이민석 변호사(공동집행위원장)
2. 비방방송의 문제점과 공정수사촉구 - 연기영 교수(공동단장)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화. 02) 523-8760~7 goodlaw@goodlaw.org / 문의; 윤소라 위원장

허위 비방 방송하는 채널A의 인가를 취소하고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

1. 채널A는 애국적 시민주권운동이며, 유권자운동단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비방 방송을 2017년 11월 19일과 11월 20일 두 차례나 하였다.
2.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19년 동안 헌신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매년 1천여명의 대학생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순수한 애국심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국정감사를하는 **국회의원을 모니터링·평가하여 ‘국회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는 ‘**국정감사 모니터 평가(우수상 시상)’** 제도를 정착시켜 왔다.
3. 채널A는 우리 국감모니터단의 평가지표가 인터넷에 365일 공개·게시되어 있음에도 평가지표도 공개하지 않고 협잡을 한다는 등 반복해서 **국감NGO모니터단**을 비방하는 방송을 하였다.
4. 채널A는 지난해 11월 14일 작당하여 무단 잠입, 주거침입, 퇴거불응의 폭력행위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등의 **언론윤리에 어긋난 불법취재**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는 등 초상권 침해를 하며, 더욱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등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죄를 저질렀다.
결국 채널 A는 **취재빙자 폭력행위**(특별법 폭력행위등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가중 처벌)와 **보도빙자 인격살인**(특별법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형법제309조 가중 처벌)의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
5.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① **경찰과 검찰은** 채널A의 고의적인 허위비방 방송 책임자를 구속수사하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훼손하고 의정감시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제보한 취재원을 색출하여 법대로 10년이하 징역 등 엄중 처벌하라.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전파가 국가 사회에 해악이 되는 허위 비방 찌라시 보도에 더이상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채널A의 종편인가를 즉각 취소하라
 -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악의적 비방보도로 개인과 단체의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자행한 채널A에 대해 즉각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과 심각한 불법행위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직권 중재하라.

2018. 3. 6.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공동위원장 모니터위원 일동

채널A 규탄성명

2017.12. 28./ 국회 헌정기념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반석빌딩 6층 전화.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간사단체 법률소비자연맹

언론윤리와 방송의 본분을 유린하며 허위·비방보도로 국회와 NGO활동을 해파한 채널 A의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고, 방통위는 채널A의 종편채널 사업자 승인을 취소하라

1.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19년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매년 1천명의 모니터들이 국가발전과 국민권익을 위하여 국회 의정감시를 해온 유권자단체, 납세자단체, NGO연대기구로서, 국가의 예산지원까지 사양하면서 국감시작부터 혼신의 힘으로 모니터링하고 공명정대한 평가로, 여야는 물론 미국·일본 등 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정감사모니터단을, 채널A가 비방목적 허위사실보도(형법 제 309조 제2항, 징역 7년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와 취재를 빙자한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 허위사실과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와 신용훼손(형법 제313조)을 한 것을 규탄하며, 이러한 비방방송을 사주한 취재원을 색출하여 대법원 판례(93도3535 판결)대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으로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 채널A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살인자도 보호해야 할 성명권과 초상권, 단체의 명예와 신용, 이미지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지난 20년 동안 무보수 자원봉사로 해온 건전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연대활동을 모욕하고 해파하였고, 그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모든 국회의원들까지 모욕한 것이다.
3. 이에,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다음과 같이 규탄하고 촉구한다.
 하나. 폭력행위등처벌법을 위반하고, 출판물에 의한 비방목적 허위사실 보도를 한 채널A 대표이사, 보도관계자와 김○웅 기자를 구속수사하라 !
 하나. 채널 A는 해당 비방목적 허위보도를 즉각 삭제하고, 정정 사과보도하라 !
 하나. 방송, 보도, 취재를 가장해 건전한 시민단체를 파멸시키려는 음해 취재원을 색출하여 대법원 판례대로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라 !
 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중한 공용전파를 악용해 국회와 시민단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채널A의 종편사업자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 동 단 장

姜聲奎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대표)	姜泰旭 (민주주의 이념연구회 상임회장)	金大仁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金英大 (환경문화시민연대 대표)	金鍾哲 (4.19혁명정신선양회 회장)	朴完洙 (한의학박사, 가천대의대 교수)
徐聖喆 (시민운동연합신문 발행인)	宋道眞 (한국대학생봉사단 공동단장)	梁琴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대행)
嚴虎聲 (변호사, 17·18대 국회의원)	延基榮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吳昊錫 (국회개혁법국민연합 중앙위 의장)
禹鍾順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 사장)	元仁浩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李來哲 (전국NGO단체연합 대표)
李子賢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丁璨煦 (파리 석문학회 설립자)	趙柄倫 (국민주권실천법국민연대 대표)
趙泰任 (한국부인회 총본부 회장)	崔承宰 (소상공인생존권연대 대표)	黃康周 (사단법인 은빛봉사회 회장)

외, 공동위원장 등 임원 및 참가단체 회원 / 시민 대학생 모니터위원 일동

채널A의 비방목적 허위보도 사건

== 방송을 빙자하며, ①폭력취재 - ②허위사실로 ③비방방송한 채널A책임자를 ④구속수사 ⑤인가취소하라==

피해자와 사건 배경

27년~20년 전통의 국회 의정감시전문 시민/사회단체
(비영리 비정부 사회봉사 시민단체, 그 연대 기구임)

우리 피해자(단체)들은 순수한 주권시민(단체)으로서, 국회(국회사무처 포함)등 국가기관과 권력기관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민주시민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며, 막강한 기관을 전문성/공정성으로 감시/평가(우수상 시상)한바, 그 공정성/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에 편승하여 모니터/평가도 하지 아니한 짝퉁상들이 난립했다, 피감기관인 국회(사무처 주관)까지 유권자들을 속이는 짝퉁상을 남발하며, 국회를 타락시키고 있어서, 우리(피해자 단체)는 그 심각성을 알렸고, 국민혈세로 수억원씩 상금을 주는 국회의 엉터리 짝퉁상의 문제점을 보도자료로 사회고발(2017.5.30. 동아일보 공동작업)하였던바 국회관계자들은 사과는 커녕 강하게 반발했다.

가 해 자

① 익명의 취재원《국회 사무처 간부 추정》

② 채널A 책임자《취재원에 교사당해 채널방송권 악용》

악질적보도 이유 - 위 피해자 사건배경 참조 - 국회가 “12년간 국민혈세낭비 국회상 엉터리” 보도에 보복

범행방법

① 취재방법 - 폭력행위 작당/주거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등

② 보도방법 - 피해자(사람+단체)는 100% 노출시켜

허위사실로 비방 조롱하고 형법제309조 제2항

가해자측은 모자이크처리해서 진실확인 곤란케 함

법적문제

① 취재빙자 폭력행위(특별법 폭력행위등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가중 처벌)

② 보도빙자 인격살인(특별법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형법제309조 가중 처벌)

